

의안번호	2208996
의 퇴 인	민형배의원
회 답 일	2025.4.14.
추계번호	25D158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재투자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500만원(연평균 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6조)	9	9	9	9	9	45	9

주: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기금의 설치), 안 제4조(기금의 조성), 안 제5조(기금의 용도)	-지역재투자 ¹⁾ 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재투자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부금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구성함 -기금은 지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지역재투자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설치하는 17개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무규정
3	안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관리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재량규정

- 1) 제정안에서 “지역재투자”란 지방자치단체나 금융회사 등이 지역의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출연 및 기부를 하고, 그 출연금 및 기부금품을 지역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함

4	안 제9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	의무규정
5	안 제10조(지도·감독)	-금융위원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기금의 설치), 안 제4조(기금의 조성), 안 제5조(기금의 용도)	×	-동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기금 출연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다만, 현 시점에서 기금의 용도인 저신용·저소득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액, 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및 자금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2	안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	-
3	안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	-기금 운용·관리 업무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게 되는 경우 업무수행에 따른 진흥원의 인력증가, 전산시스템 운용비용 발생 등이 있을 수 있어 정부출연금에 증가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향후 발생할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가 곤란함
4	안 제9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결손부족액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5	안 제10조(지도·감독)	-	미대상: 금융위원회는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을 지도·감독 ²⁾ 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지도·감독 업무가 추가되더라도 별도의 인력 또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치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위원은 9명임³⁾
 - 위원회는 분기당 1회씩 연간 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 및 안전검토수당은 회당 25만원⁴⁾으로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다고 가정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6조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를 운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백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500만원으로 추계됨

제78조(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3) 안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원장
5.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6.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8.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9.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10.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장은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4)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만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편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검토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표 2]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 수당(a)	250	250	250	250	250	—
민간위원 수(b)	9	9	9	9	9	—
회의 개최횟수(c)	4	4	4	4	4	—
합계(a×b×c)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